■ 그러나 '경영상 정보'라고 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나 **성과공유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상 정보' 요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예시)〉

▶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공정 개선이나 부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품개발·생산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경영전략이나 기술개발에 관한 자문을 요청한 경우로서 그 요청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 기술 투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나아가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하였고, 이 지침도 '18.7.17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1차 협력사 독려행위 예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이하 협력사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는 행위

▶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이하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는 행위

▶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행위

▶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그 지원범위 내에서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는 행위 등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고 싶으실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온라인 신고** : 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 **서면 신고** :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연락기관	담당지역 및 업무	연락처
고객지원담당관실	하도급법 질의 및 전화상담	1670-0007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건설하도급과	서울,인천, 경기,강원지역	02-2110-6125, 6127, 6161, 6162 (제조하도급과) 02-2110-6145, 6146, 6148, 6151~53 (건설하도급과)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부산,울산,경남지역	051-460-1042~46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광주,전남북,제주지역	062-975-6841~44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대전,충남북,세종지역	042-481-8018~19, 8021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대구,경북지역	053-230-6341, 6342, 6344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락기관	연락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 www.kofair.or.kr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	02-2124-3133 www.kbiz.or.kr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2-549-2105~6

공정거래위원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개정 하도급법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1.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됩니다.

① 납품단가 증액요청 요건 확대

■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중**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됩니다.

종전	'**원재료**(예: 원유·철광석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
추가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요청 가능

■ '납품단가 증액 요청'은 개별 하도급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 **개별 하도급업체**는 원재료비·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직접**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개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그러한 요청 자체를 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거래의 현실인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만, 조합의 대리 요청은 공급원가 상승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납품단가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①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비용('재료비')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② '인건비(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한 경우 * 다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③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 **'경비**(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증액 요청 가능 (다만, 계약기간 자체가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증액 요청 가능)
④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 **경비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조합을 통해 증액요청 가능

■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납품단가 증액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한편, 하도급업체나 조합의 대금 증액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단가를 증액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① 공정거래조정원, ②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③ 전기공사협회, ④ 정보통신공사협회, ⑤ 광고단체연합회, ⑥ 엔지니어링협회, ⑦ 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⑧ 건축사협회, ⑨ 소방공사협회, ⑩ 공정경쟁연합회

② 그 밖에 달라지는 제도

■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도 **금지**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경영정보 요구행위')

> * ①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②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③ 거래처 명부 등 영업관련 정보, ④ 제품생산·판매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등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i)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ii)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기술수출 제한행위')

④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

■ 또한, 종전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복행위**도 그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 그동안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i) **원가정보**, ii)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iii) **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출액·거래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 원사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세부 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했고 그 고시는 '18.7.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

▶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물품 등의 원가에 관한 정보
: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 등

▶ 원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에 관한 정보
: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하도급업체의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 대한 납품가격·거래조건 등

▶ 하도급업체의 경영전략에 관한 정보
: 제품개발·생산·판매계획, 신규 투자계획 등

▶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전산망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 등